<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>

1 숙식 정보 등이 기재된 표준근로계약서 활용

○ 당사자 간 **근로계약서에 숙식 제공 형태, 근로자 부담액*** 등 명시

*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숙식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으나, 사업주가 합의 하에 숙소 등을 제공할 경우 근로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비용 징구 가능

-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 **고용허가서 발급 시, 숙식 관련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안내**

2 사업주가 숙소비를 징구하려는 경우 숙소비 산정 기준

○ 외국인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지역 시세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**사업주는 숙소비 산정근거를 충분히 제시할 필요**

- **(사업주 제공 숙소의 실거래가 확인 가능) 실거래 금액 등에 기초하여 당사자 간 합의**를 통해 숙소비 결정

- **(사업주 제공 숙소의 실거래가 확인 곤란) 해당 지역 시세*, 숙소 형태,** 관할 **지방노동관서의 가이드라인 등에 기초하여 당사자 간 합의**를 통해 숙소비 결정

*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(국토부)에 공개된 해당 지역 단독·다가구 월세 가격 등을 참조

○ **1개 숙소**에 다수 근로자가 **공동거주 시** 숙소비 **공동부담(1/n)**

* 실거래가(시세) 월 30만원인 숙소에 2명 이상 거주 시, 근로자에게 각각 30만원씩 월세를 징구하면 안됨

○ 사업주가 가설건축물(지자체 축조신고필증 교부)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**해당 지역 월세 최저액을 넘지 않도록 함**

- 다만 개별 시설 수준의 편차가 클 수 있으므로 **권익보호협의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**하여 반드시 당사자 간 협의 거쳐 결정(별도 붙임 참고)

3 숙식비 징구방식

○ 사업주는 근로자와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숙식비를 징구할 수 있음.

- 숙식비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후 사후 징구 하거나,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 사전 공제할 수 있음. 이 때 외국인근로자의 자국어로 기재된 공제동의(서면)를 받아야 함.(별도 붙임 참고)

-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, 식사를 제공받기로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함

4 기타

○ 냉·난방비 등 계절적으로 변동이 있거나, 전기요금·가스비·인터넷 사용료 등 이용량 등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은 실제 발생하는 비용에 따라 사후 정산 원칙

5 **시행일자:** '23.11.27., 지침 시행 즉시 **기존 「숙식비 지침*」 폐지**

* 「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」('17.2.10.)